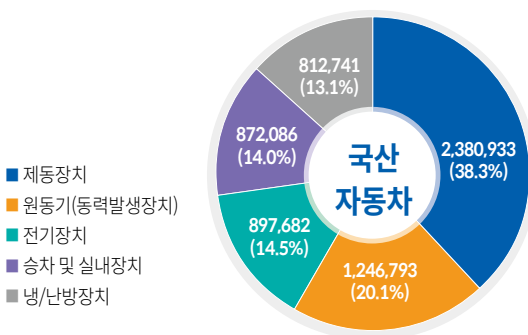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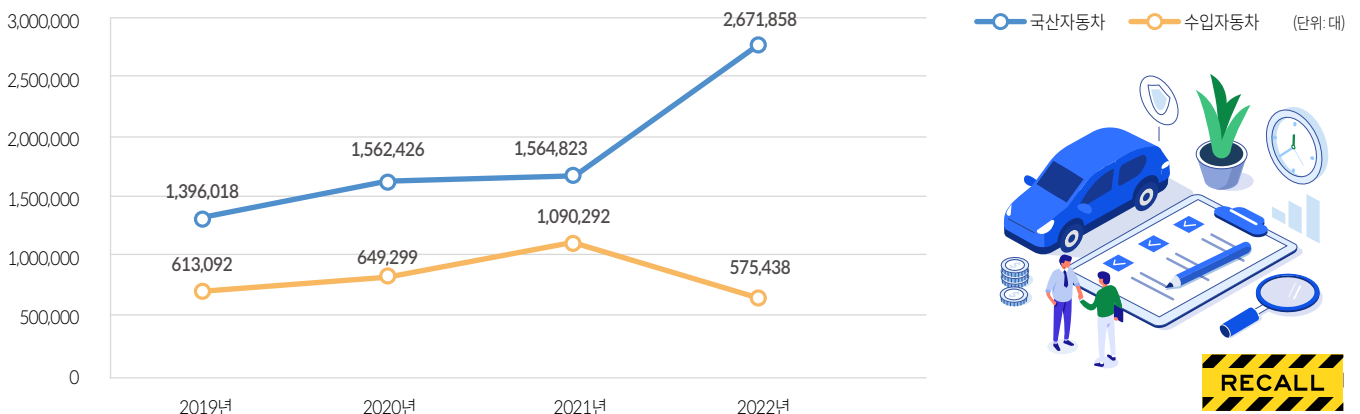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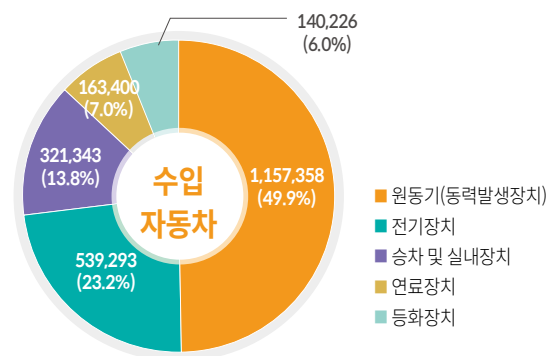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는 2만km 이내인 자동차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10월 24일에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하자 발생에 따른 리콜 현황,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건수 등 주요 통계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자동차 리콜 현황 (국토교통부 안전결함관련 기준)



리콜현황 (장치별 TOP5)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2019~2022년 기준

자동차의 제작 또는 설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들은 수리 등의 조치를 통해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 현황을 국토교통부 안전결함관련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산자동차는 약 7백만대, 수입자동차는 약 3백만대가 리콜되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한 후 리콜 등을 통해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해당 하자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라면 하자차량의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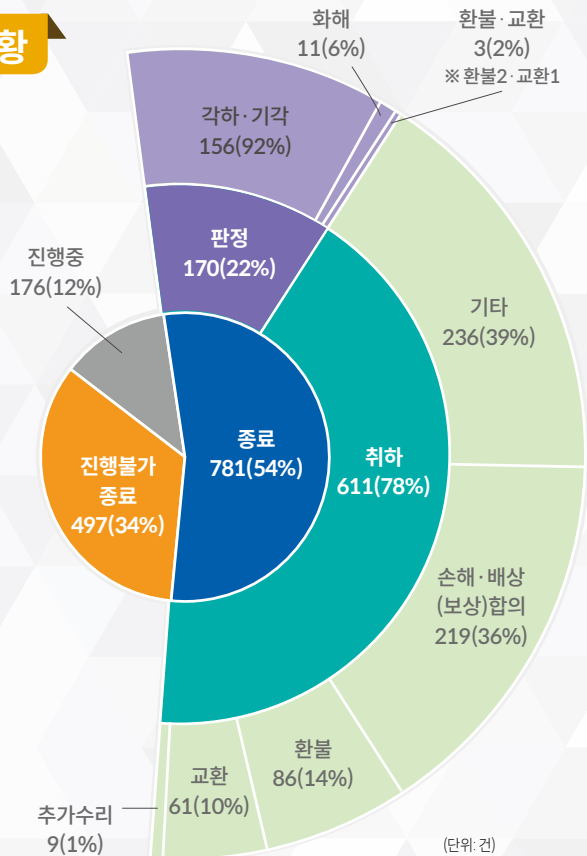
- 교환·환불 대상**
 - 비사업용 차량(개인사업자 1대 허용)
 - 신차 인도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 교환·환불 요건**
 - 중대한 하자 2회 수리 후 동일 증상 발생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제동장치·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주행관련 전기/전자 장치)
 -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동일 증상 발생
- 환불 산정 기준**
 - 총 판매가격 x 주행거리 사용 이익 비율+필수비용(취득세·번호판대)
- 교환·환불 요건**
 - 인도 후 2년 이내 소유자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신청
 - 중재부 구성 및 심리/판정
 - 교환·환불 진행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 종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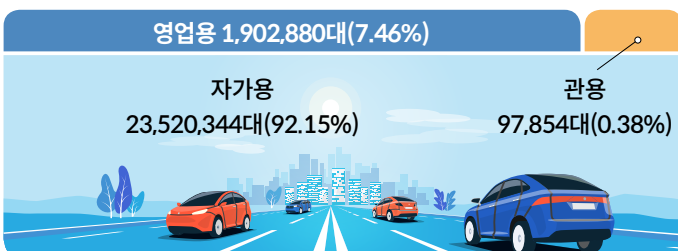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도입 이후 교환 또는 환불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교환, 환불, 기각 등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0건이며, 611건은 제조사와 소비자간에 합의 등을 이유로 취하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2. 2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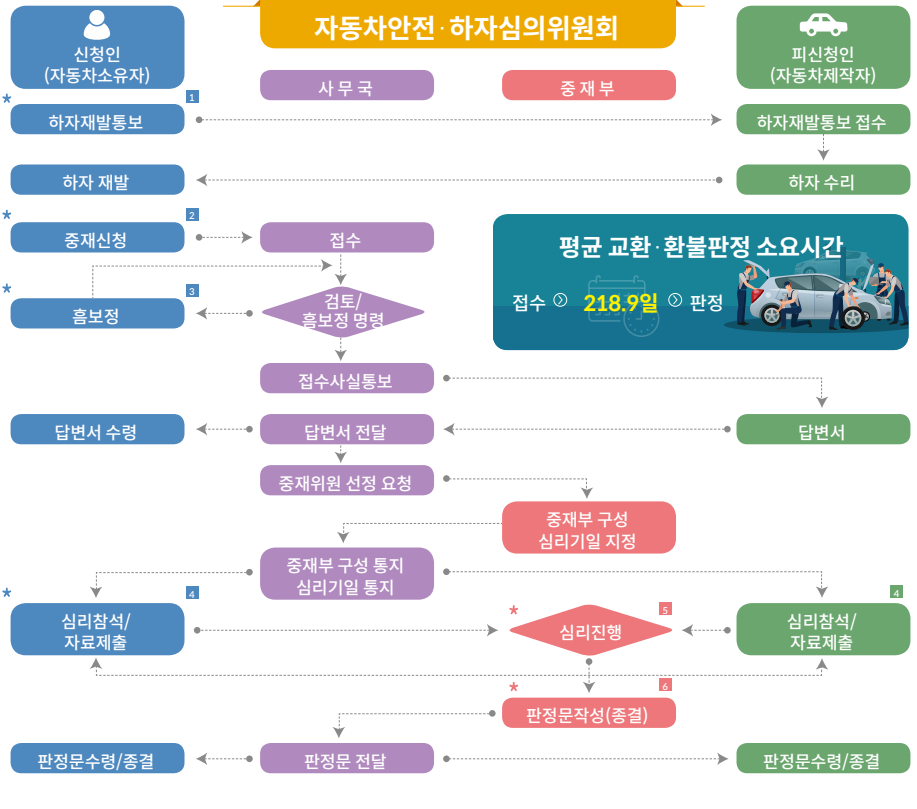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22년 기준

■ 2022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중 7.5%에 해당하는 190만대가 영업용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는 교환 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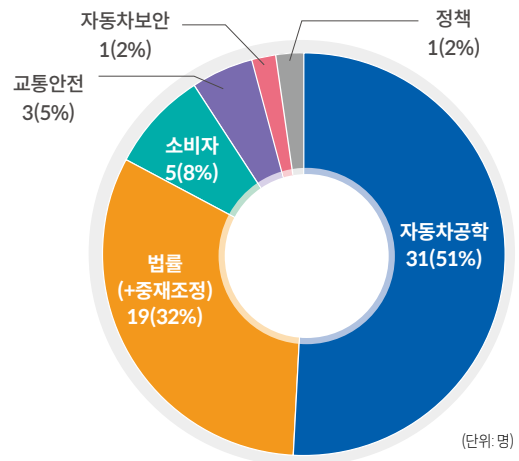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절차는 크게 하자재발 통보, 중재신청, 홍보정, 심리참석, 심리진행, 판정의 6단계를 거쳐 최종 교환·환불, 기각, 화해 등의 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1 하자재발 통보**
 - 중대하자 1회(일반하자 2회)이상 수리 후 하자재발 시 통보
 - 미통보 시 신청 각하
- 2 중재신청**
 - 중재신청 등 중재절차는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 3 홍보정**
 - 신청서 상 수정사항이 있거나, 제출 서류가 미흡할 경우 기간 내 수정 및 보완 필요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각하
- 4 심리참석**
 - 당사자 심리 참석 및 진술
 - 불참시 시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진행 가능
- 5 심리진행**
 - 심리는 1회 이상 진행
 - 필요 시 검증, 사실조사 시행
 - #심리진행상황에 따라 수개월 소요 가능
- 6 판정**
 - 교환·환불/기각/화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자동차·법률·소비자보호·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현재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태영호의원[2102179]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정청래의원[2106316]	결합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함(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의4제4항)
태영호의원[2107259]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안 제47조의2제1항)
소병훈의원[2113575]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서일준의원[2120489]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민홍철의원[212154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Data&Law」는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ISSN 2982-6241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